



행복마을 구산동, 100년의 시작!

# 2022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구산동 주민자치회

# 목차

<b>2022년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보고서 목차</b>	<b>01</b>
인사말	02
<b>01</b> 구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04
<b>02</b> 구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05
<b>03</b> 구산동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06
<b>04</b>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08
<b>05</b> 구산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13
<b>06</b> 2022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15
<b>07</b> 구산동 주민총회 결과보고	21
<b>08</b> 2022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활동사진	30
<b>09</b> 구산동 주민자치회 로고(BI) 공모전 결과보고	35
<b>10</b> 구산동 주민자치회 위원 소감	36
[별첨1]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40
[별첨2]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47

## 회장님 인사말

“  
행복마을 구산동,  
100년의 시작!”



2022년은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 동안 미뤄왔던 대면활동들이 많아지면서 더 바쁘게 움직였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치뤄야했던 주민총회를 올 해는 많은 주민분들을 직접 한 자리에 모시고 축제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을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작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처음으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60+ 시니어모델 아카데미’ 아이들의 심신 발달을 위한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취약계층의 이·미용과 지역상권을 살리기위한 ‘시원썩썩’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산동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책읽기 어렵지 않아요’ ‘수국사 주변 산책로 정비’ 사업을 실행하며 남녀노소,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한 마을이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사업실행이 처음이다보니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도 총 10개의 사업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올 해의 경험을 발판삼아 좀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즐겁게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여러분들도 주민자치회의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칭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애쓰신 구산동 주민자치회 위원분들과 분과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이상훈

## 동장 인사말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장 고덕환입니다.”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하나로 모이는 곳, 개인의 삶의 경계를 넘어 주민이 함께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곳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주민자치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코로나19 등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구산동만의 주민자치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은 그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복잡해지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면 주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산동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회를 통해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을 찾고,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산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중심인 구산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의제 발굴부터 실행, 주민총회, 자매결연 사업,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등 숨가쁘게 달려온 2022년을 지나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상징하는 검은 토끼 계묘년의 뜻처럼 구산동 주민자치회의 무궁한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산동장 고덕환

# 1. 구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 2. 구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현황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문화를 통해 마을의 개선하고 싶은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을 주민과 행정의 협의를 통해 진행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 46명 (2022. 12. 01. 기준)

계	성 별(명)		연 령 별(명)			단체 · 개인 별(명)	
	남	여	40대	50대	60대 이상	단체	개인
46	23	23	5	18	23	20	26

주민자치회 임원진 현황 (2022. 12. 01. 기준)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장	분과총무	사무국장	간사
이상훈	유해영	노성호 김태성	정윤선, 정윤희 마정옥, 윤만호	한덕순, 이영길 민은주, 이호용 최순애	이진숙	이경진

주민자치회 분과 현황 및 주요업무 (2022. 12. 01. 기준)

분과명	주요업무	2022년 추진사업	사업비용	사업성과
자치회관 운영분과	자치회관 활성화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60+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6,000천원	지역 어르신들이 모델수업을 통해 바른자세와 자신있는 표정을 유지하여 삶의 활력을 찾음
그린미래 분과	마을의 쾌적한 환경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7,100천원	봉산에서 자연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며 아동들의 심신건강 발달을 도모
나눔돌봄 분과	어르신, 장애인, 취약 계층 등 주민의 건강 과 복지사업 추진	시원씩뚝	6,810천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취약계층의 생활에 도움이 됨
다음세대 분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다음세대를 위한 사업추진	구산동 청소년자치위원회 조직 및 운영	26,091천원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시민의식 성장 도모
교육문화 분과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교육사업추진	책읽기, 어렵지 않아요	12,650천원	독후활동 및 요리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과의 문화공유 이룸

### 3. 구산동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시 기	운영내용	세부 운영 내용
2022. 1.	2021년 마무리 2022년 시작	- 2021년 사업정산 - 정기회의(비대면) - 2022년 주민자치회 상반기 운영예산 교부
2022. 2.	2022년 사업계획	- 2022년 사업계획 공유 및 논의
2022. 3.	분과워크숍 개최 운영세칙 개정 주민의제 접수	- 3월 11일/18일 : 분과워크숍 개최 - 3월 22일 :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 3월 22일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3월 31일~4월1일 : 민관협력워크숍 개최 - 수국사주변 꽃모심기 행사 개최 - 주민의제 접수
2022. 4. ~5.	사무국장·간사 공개모집 의제설명회 개최	- 사무국장·간사 공개모집 - 사무국 인선 소위 구성 및 운영 - 사무국장·간사 최종 선발 - 의제설명회 및 선호도투표
2022. 6.	2023년 의제 부서검토 구산동 주민자치회 로고 공모	- 2023년 발굴의제 협치담당관 제출(총 25건) - 6월 29일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워크숍 개최 - 2022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사업 진행 시작 - 2022. 3분기 자치회관프로그램 접수 - 구산동 주민자치회 로고 공모 - 상반기 지도·점검 시행(자치안전과) - 사무국 사전교육 수료 및 사무국 운영 체제 출범 - 지원관 업무지원 종료
2022. 7.	자치회관 프로그램 재개관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 2023년 의제 부서검토 결과 적정 8, 부적정 6, 조건부 2 - 주민총회 의제 확정 - 구산동 주민자치회 로고 최종 선정 - 자치회관 프로그램 재개관 - 자치회관 자매결연 교류사업 (관내 청소년 여름방학 농촌체험)추진 - 주민자치회 회비 논의 및 부칙 개정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1차회의 진행

2022. 8.	2022년 주민총회 사전투표	- 자매결연지 농특산물'복숭아'직거래 행사개최 - 주민총회 사전투표 진행 - 은평구 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2차회의 진행
2022. 9.	2022년 주민총회 개최 2022년 마을의제 선정	- 제2회 구산동 주민총회 개최 - 2022. 4분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접수 - 16개동 사무국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22. 10.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축제	-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축제 개최 - 2022. 파발제·은평누리축제 개최 - 연임위원 확정
2022. 11.	제2기 주민자치위원 구성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 연임위원 연임교육 - 제2기 신규위원 모집 - 자매결연지 농특산물'절임배추'직거래 행사개최 - 하반기 지도·점검 시행(자치안전과) - 동 감사 시행(구청 감사과) - 주민자치회 시보조금(900만원) 정산
2022. 12.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 12월 9일 : 제2기 위원 공개추첨식 - 12월 20일 : 성과공유회 개최



## 4.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감사종류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내역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4.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점검
조치사항	1.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내역 - 분과 활성화 필요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 민관협력회의록 미비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 특이사항 없음 4.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점검 - 특이사항 없음
종합의견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감사 노성호, 회계감사 김태성은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관련 전반사항을 점검표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실행하였으며 회계지출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붙임. 1. 구산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1부. 끝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제출자: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감사( 노 성 호 (서명))

제출자: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회계감사( 김 태 성 (서명))

은평구청장 귀중

## 구산동 주민자치회 세부 감사보고

### 감사 개요

- 근 거
  - 서울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15조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4조 4항
- 감사일시 : 2022년 12월 9일 15:00
- 감사장소 :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 감 사 자 : 노성호 사업감사, 김태성 회계감사

### 감사 내용

#### 1. 사업부문 주민자치회 조직과 운영내역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월1회, 매월 네번째 화요일)	양호
2	운영진회의 (월1회, 매월 세번째 화요일)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운영진들의 바쁜 일정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단체톡으로 진행해야 한 점이 아쉬움
3	분과회의 (분과별 월1회)	그린미래분과 10,11월 회의 미진행
4	사무국회의, 민관협력회의 (필요시 상시 진행)	민관협력회의록 작성 권고
5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 6월 29일 주민총회준비위원회 워크숍 진행 - 대면회의 총2회 진행
6	주민총회 결과 정리와 주민 공유	결과보고서 작성 후 공유 함
7	자치회관 운영	- 2022년 3분기 재개관 -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대화가 많거나 밀접접촉이 많은 강좌는 추후 재논의 하기로 함

## 2. 주민자치회 예결산 및 회계 처리과정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주민자치회 예산수립(세입과 세출)의 적정성: 예산과목 준수 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시정사항 없음
2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양호
3	예산편성시 모든 예산의 누락여부	해당사항 없음
4	주민자치회 명의의 전용통장 개설 및 사용 여부	통장 확인, 체크카드 확인
5	주민자치회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주요 회계장부 비치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이상없음
7	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신용보증보험 가입 여부	신용보증가입
8	자치회관 수입 등 유료 프로그램의 수입 누락계상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양호
9	지출서류(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매 건마다 증빙서류가 적당하게 증빙되어 있음
10	예산의 허위성 지출 여부	해당사항 없음
11	급여 및 활동비 지급의 적정성	적정하게 지급됨
12	소득세, 주민세의 원천징수 이행 여부	이행확인
13	근무시간에 따른 간사활동비 지급의 여부 (기타소득세 납부여부)	양호

## 3. 행정서류와 각종 문서, 장부 및 직인관리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정기회의, 분과회의, 운영진회의 회의록 비치	양호
2	주민자치회 위·해촉 사임 대장	양호
3	직인대장과 문서대장	양호
4	직인의 보관관리	적정관리
5	세무서 고유번호증 보관관리	보관 관리되어 있음
6	사업계획서 및 사업운영 필요서류	양호
7	연 1회 재물조사 실시 여부, 조사표 부착여부	양호

## 4. 주민자치회 사업(주민세, 참여예산) 현황점검

연번	감사내용	감사결과
1	구산동 청소년위원회 조직 및 운영 (주민세균등분환원사업)	- 11월16일 임명장 수여 - 12월7일 성과공유회 진행으로 사업 마무리
2	60+시니어모델아카데미	- 모델워킹 및 메이크업수업 총4회진행 - 8월9일 성과공유회진행으로 사업 마무리
3	봉산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 10월 8~9/15~16/22~23 총3모듬으로 진행
4	시원씩뚝	- 이·미용 쿠폰발행 400장 중 현재 231장 사용
5	책읽기, 어렵지 않아요	- 독후활동, 부모공감워크숍, 어느나리음식까지 해봤니 총3프로그램 진행 - 11월8일 성과공유회 진행으로 사업 마무리

## 5. 총평

### 사업감사



올 해는 구산동 주민자치회가 조직 된 이후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기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있었으며 상반기 두 번의 선거로 6월에서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기에 사업 참가자들을 모집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과위원 모두가 분과 진행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감사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가 적정하게 증빙되어 있습니다. 단, 상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두 번의 선거로 인해 사업 진행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바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로 주민자치 회비에 관한 부분도 점검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 은평구청장 귀중



## 5. 구산동 주민자치회 회계현황

2022년 12월 9일 기준

### 2022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비 총계정원장

(단위: 원)

구분	2022 총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율(%)	잔액	예금이자
	34,400,000	34,400,000	30,810,000	90%	3,200,000	-
시비	9,000,000	9,000,000	9,000,000	100%	-	
구비	25,400,000	25,400,000	22,200,000	87%	3,200,000	

### 예산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2022 총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율(%)	잔액
		34,400,000	30,810,000	90%	3,200,000
사무국장 활동비	소계	14,000,000	12,000,000	86%	2,000,000
	사무국장활동비	14,000,000	12,000,000	86%	2,000,000
간사활동비	소계	14,400,000	13,200,000	92%	1,200,000
	간사활동비(시비)	3,000,000	3,000,000	100%	
	간사활동비(구비)	11,400,000	10,200,000	89%	1,200,000
기본경비	소계	1,782,520	1,782,520	100%	
	사무관리비	1,196,970	1,196,970	100%	
	공공운영비	585,550	585,550	100%	
사업비	소계	4,217,480	4,217,480	100%	
	사무관리비	390,000	390,000	100%	
	행사운영비	1,920,390	1,920,390	100%	
	행사실비보상금	1,799,090	1,799,090	100%	
	사무국장교육수당	108,000	108,000	100%	

2022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주민세균등분환원사업비 총계정원장 (단위: 원)

구분	2022 총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율(%)	잔액	예금이자
	52,091,000	52,091,000	36,059,190	69%	16,051,962	
의제개발비	26,000,000	26,000,000	18,251,460	70%	7,748,540	20,152
의제실행비	26,091,000	26,091,000	17,807,730	68%	8,283,270	

예산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2022 총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율(%)	잔액
의제개발비	26,000,000	26,000,000	18,251,46	70%	7,748,540
	사무관리비	5,000,000	2,111,000	42%	2,889,000
	행사운영비	14,400,000	12,164,360	84%	2,235,640
	행사실비지원금	6,600,000	3,976,100	60%	2,623,900
의제실행비	26,091,000	26,091,000	17,807,730	68%	8,283,270
	사무관리비	7,530,000	719,000	10%	6,811,000
	행사운영비	15,101,000	14,492,560	96%	608,440
	행사실비지원금	3,460,000	2,596,170	75%	863,830

2022년 구·시 참여예산 집행현황 (단위: 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1	60+시니어모델아카데미	6,000,000	6,000,000	-
2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7,100,000	6,750,000	350,000
3	시원씩뚝	6,810,000	3,072,600	3,737,400
4	책읽기, 어렵지 않아요!	12,650,000	9,596,540	3,053,460

## 6. 2022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 주민세 균등분 환원 사업 1건

#### 다음세대분과

#### 구산동 청소년자치위원회(터틀크루) 조직 및 운영 (예산: 26,091천원)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시민의식 성장 도모



#### • 청소년 동아리 지원

- 구산동 도서관마을 청소년 동아리 퍼실리테이션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퍼실리테이션의 기법과 도구를 알고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삶을 실현하는 환경을 제공 함.
- 작은공론장을 진행하여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구성, 마을에서 스스로 청소년 사업 의제를 발굴함.

#### • ‘청소년-직업인’과의 만남 프로그램

대한항공 부기장, 작가, 출판사 마케터, 은평구의원, 성우 등 다양한 직업인들과의 만남을 소규모 단위로 진행함으로써 직업인과의 충분한 대화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참가 학생 뿐만 아니라 직업인들의 만족도도 높았음.

#### • 문화예술프로그램

동네탐방을 통해 마을에 대해 알고 마을에 어울릴 심볼(벽화) 등을 제작함.

#### • 성 평등한 진로직업 탐색

이색직업, 성별에 맞는 직업군, 우리마을의 직업 등을 탐방하고 체험함.

#### • 기후시민교육

기후변화에 대해 배우고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을 도모하고 에너지전환의 지역 사례들을 탐방하여 지역을 연계한 교육을 실시함.

#### •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으로서 자존감, 인권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 내 일상의 연결고리를 찾음.

## 구·시 참여예산 사업 5건

### 자치회관운영분과

60+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예산: 6,000천원)

- 기초 모델 수업

60세이상 시니어들의 평소 잘못된 자세와 체형을 바로잡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워킹을 학습함.

- 메이크업 훈련수업

시니어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자의 얼굴 특징에 맞는 메이크업을 학습함으로써 노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찾는데 기여함.



## 그린미래분과

###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 (예산: 7,100천원)

코로나시대를 지나며 더욱 심해진 어린이들의 '자연결핍'을 치유하며, 어린이들의 본래 생명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숲 체험교육. 우리동네 가까운 숲인 '거북골근린공원'에서 또래친구들과 즐거운 관계형성을 통해 자연과 사람과의 깊은 교감을 갖는 경험을 갖는다.

#### • 숲속의 보물을 찾아

오리엔티어링을 통해 숲속 보물을 찾는 모험

#### • 숲에서 놀아요

뱃줄/해먹/자연물을 이용한 생태놀이



## 시설사업 <주관부서-공원녹지과>

### 수국사 주변정비 (예산: 24,000천원)

수국사 일대 산책로에 야자매트 및 벤치 설치 등 산책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봉산이용 및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제고 함.



수국사 주변정리 전



수국사 주변정리 후

## 나눔돌봄분과

### 시원씩둑~ [ 소요예산: 6,800천원 ]

관내 5개 미용실과 협약하여 이·미용 쿠폰을 발행하여 취약계층에게 나눠줌으로써 무료로 이·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됨



교육문화분과

책읽기 어렵지 않아요! [ 소요예산 : 12,650천원 ]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언어교육, 문화공유 등 다문화교육

•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하는 '독후활동'

책을 읽고 놀이를 하면서 우리 문화를 경험하고 익히며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배움

• 다문화 부모들과 함께하는 '부모공감 워크숍'

다문화 부모는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소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배움 또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부모심리교육을 통해 치유하는 시간을 가짐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어느나라 음식까지 해봤니!'

다른 나라 음식을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자신감을 갖음



## 7. 구산동 주민총회 결과보고

- 일 시** 2022. 9. 3.(토) 오후 2시
- 장 소** 구산동 주민센터 지층 건강증진실
- 보고사항** 2021년 감사보고 및 2022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운영현황(활동)보고
- 의결사항**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의결
  - 2023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 참여대상** 2022년 8월 3일 기준 만 16세이상 구산동 주민

### 주민총회 준비과정

○ **의제발굴을 위한 분과워크숍**

3월 11일, 18일 총2회 진행

○ **주민의제 접수**

~ 3월 31일까지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워크숍**

6월 29일 진행

주민총회란 무엇이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역량강화

○ **주민총회준비위원회 1차회의**

7월 28일(목) 19:00

- 주민총회 공고문 논의
- 슬로건, 홍보방법 논의

○ **주민총회준비위원회 2차회의**

8월 16일(화) 19:30

- 영상, 홍보물 업체 선정 논의
- 업무분장논의
- 홍보방법 논의

▽ **사전투표 진행**

- 온라인투표 : 8월 25일 ~ 31일 (7일간)
- 투표소운영 : 8월 29일 ~ 31일 (3일간) 구산동 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회 사무실



## 2022 구산동 제2회 주민총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구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산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민총회 개요》

- 일 시 : 2022년 9월 3일 (토) / 오후 2시
- 장 소 : 구산동 주민센터 지층 건강증진실
- 보고사항 : 2021년 감사보고 및 2022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운영현황(활동)보고
- 의결사항 :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의결 - 2023년 은평구 참여예산 동(洞) 지역사업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자치계획 결정을 위한 투표》

- 투표기간 : 2022. 8. 25.(목) ~ 8. 31.(수) 7일간
  - 온 라인 투 표 : 2022. 8. 25.(목) 09:00 ~ 8. 31.(수) 18:00 (참여의큰술 가입)
  - 상설현장 투표소 : 2022. 8. 29.(월) 10:00 ~ 8. 31.(수) 17:00  
주민자치회 사무실(구산동 주민센터 3층)
  - 사전투표 개표일시 : 2022. 9. 2.(금) 10시~ 개표 마감시까지(참관인 사전신청가능)
  - 사전투표 결과보고 : 2022. 9. 3.(토) 14시

《주민총회 참여 자격》

- 만 16세 이상(2006. 9. 3.이전 출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구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구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구산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개최요건》

-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2022. 8. 3.) 주민등록상 인구 32,100명 중에서 0.5%인 161명 이상의 투표로 개최한다.

《주민총회 결과보고》

- 당일 현장투표표 발표 및 한 달 이내 은평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공지

《기타》

- 위 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 주민총회 후 서울특별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조정·결정한다.
- 문의 : 구산동 주민자치회 02-351-4132

2022년 8월 3일  
구산동 주민자치회장



### 주민총회 마을의제발굴 부서검토 결과

사업명	금액(천원)	제안자	검토부서	적정/부적정	비 고
가족다양성의 이해	4,500	김경미	협치담당관	적정	
공유냉장고	10,000	마정욱	자치안전과	부적정	
봉산을,듣고,보고,만지고,느끼는 미래세대	5,000	정윤희	협치담당관	적정	
어르신들의 반찬만들기	10,000	김생두	협치담당관	적정	
우리동네 미니수영장	10,000	한덕순	자치안전과 공원녹지과	적정	
우리동네 소화기함	4,000	이진숙	자치안전과	적정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모임활동 지원	5,500	이호용	시민교육과	적정	
학부모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들자	2,520	이호용	협치담당관	적정	
거북골 숲체험장 내 cctv설치와 꽃나무 식재	20,000	김미경	공원녹지과	적정	
공원 조성(개나리동산)	10,000	임종숙	공원녹지과	조건부적	수국사 관계자와 협의 후 진행
밤에도 걷기좋은 무장애 숲길	10,000	이진숙	공원녹지과	부적정	
봉산 무장애 숲길 숨바꼭질	42,500	정윤희	공원녹지과	부적정	
봉산 산책로에 스토리텔링을 입히자	10,000	탁은정	공원녹지과	부적정	
봉산 생태다리에 포토존을 설치하자	20,000	이호용	공원녹지과	부적정	
수국이 있는 수국사	10,000	이진숙	공원녹지과	조건부적정	수국사 관계자와 협의 후 진행
시민자율형 반려견 운동장 설치	15,000	장지원	가족정책과	부적정	

홍보물

행복마을 구산동, 100년의 시작! 주민총회로 시작해요~  
**2022년 제2회 구산동 주민총회**  
 2022년 9월 3일(토) 14시 | 구산동 주민센터

일시: 2022년 9월 3일(토) 14시  
 장소: 구산동 주민센터 지층 건강증진실  
 내용: 2022년 감사보고,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2023년 구산동 자치계획 의결

투표대상: 70세이상 구산동 거주자 및 생활주거수구니  
 사전투표: [온라인투표] 2022. 8. 25(목) ~ 8. 31(수) 투표방법: QR코드 접속, [방문투표] 2022. 8. 29(월) ~ 8. 31(수) 구산동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과실

행복마을 구산동, 100년의 시작! 주민총회로 시작해요~  
**2022년 제2회 구산동 주민총회**  
 2022년 9월 3일(토) 14시  
 구산동 주민센터

일시: 2022년 9월 3일(토) 14시  
 장소: 구산동 주민센터 지층 건강증진실  
 내용: 2022년 감사보고,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2023년 구산동 자치계획 의결

투표대상: 70세이상 구산동 거주자 및 생활주거수구니  
 사전투표: [온라인투표] 2022. 8. 25(목) ~ 8. 31(수) 투표방법: QR코드 접속, [방문투표] 2022. 8. 29(월) ~ 8. 31(수) 구산동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과실

1회 주민자치회 구성 및 활동  
 투표안내  
 2022년 9월 3일(토) 14시  
 구산동 주민센터

2023 은평구 참여예산 동지역 사업  
 투표안내  
 2022. 8. 25(목) ~ 8. 31(수)  
 2022. 9. 2(일) 10:00 ~ 18:00

행복마을 구산동, 100년의 시작! 주민총회로 시작해요~  
**2022년 제2회 구산동 주민총회**  
 2022년 9월 3일(토) 14시  
 구산동 주민센터

일시: 2022년 9월 3일(토) 14시  
 장소: 구산동 주민센터 지층 건강증진실  
 내용: 2022년 감사보고,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2023년 구산동 자치계획 의결

투표대상: 70세이상 구산동 거주자 및 생활주거수구니  
 사전투표: [온라인투표] 2022. 8. 25(목) ~ 8. 31(수) 투표방법: QR코드 접속, [방문투표] 2022. 8. 29(월) ~ 8. 31(수) 구산동주민센터 3층 주민자치과실

2023 마을형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투표안내  
 2022. 8. 25(목) ~ 8. 31(수)  
 2022. 9. 2(일) 10:00 ~ 18:00

투표용지 시안

No. 2023. 구산동 마을의제 선정 투표 용지  
 - 은평구 참여예산 1억원, 서울시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  
 [ 각 사업별 동의, 비동의 중에 기표 ]

분야	연번	2023년 구산동 마을의제	예산 (천원)	기표란(●)채움	
				동의	비동의
프로그램 사업	1	가족다양성의 이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우리민족의 전통예절과 풍습체험]	4,5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봉산을 들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2 [봉산 및 자연 속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심신발달과 건강증진 도모]	5,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어르신들의 반찬만들기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요리교실]	10,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우리동네 워터파크 [무더운 여름 마을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터]	10,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우리동네 소화기함 [갑작스런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공용소화기함 설치]	4,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6	청소년 동아리, 모험활동 지원 [구산동 청소년자치위원회 '터틀크루' 구성 및 공론장 운영]	5,5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7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과의 소통 및 부모교육]	2,52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8	행복마을 구산동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주민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4,5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시설 사업	9	거북골 숲 체험장 내 CCTV설치 [청소년 범죄예방 및 안전보호를 위한 CCTV설치]	20,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0	개나리동산 만들기 [수국사 인근 산책로 옆 불법경작을 막고 개나리를 식재 해 주민을 위한 개나리동산 만들기]	10,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11	수국이 있는 수국사 [구산동의 대표적 관광명소 수국사에 수국을 심어 '수국이 있는 수국사' 테마 만들기]	10,000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주민총회 후 서울특별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조정·결정합니다.

			동의	비동의
* 귀하는 위 주민총회 상정된 자치계획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업 실행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개인 정보 동의 : 주민총회 정족수 확인용, 중복투표 방지 및 발송용으로 사용 (개인정보는 자료 확인 후 3개월 이내 폐기)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아래 양식에 하나라도 기입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 처리함]

이름	성 별			남 ○	여 ○
전화번호	010 -	-	(* 휴대폰 번호가 틀릴 경우 투표 결과와 경품추첨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구산동 거주 ○ 직장 ○ 지역단체소속(생활) ○				
	16세 ~ 19세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 2022년 8월 3일 구산동 인구 수 32,100명 기준, 161명(0.5%) 이상의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선정  
 \* 최종결과발표: 9월 3일(토) 14시 구산동 주민총회 / 구산동 주민센터 게시판

## 주민총회 식순

# 제2회 구산동 주민총회 식순

구분	진행	소요시간
식전공연	구산동 자치회관 '난타동아리' 예일디자인고 밴드동아리 '시나브로'	20"
오프닝	사회자	3"
국민의례	다함께	3"
내빈소개,축사	구청장, 구의장, 국회의원 등	20"
인사말씀	구산동장, 주민자치회장	5"
개회선언	주민자치회장	2"
2022년 활동보고	영상	5"
2021년 감사보고	사업감사	5"
2023년 자치계획 의결	영상 및 다음세대분과총무	20"
자치위원인터뷰	주민자치회장, 부회장	10"
축하공연	'베이비슈가'	10"
결과발표	나눔돌봄분과장	5"
경품추첨	내빈	20"
폐회선언	주민자치회장	2"
기념촬영	다함께	10"

※ 진행순서는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자 및 진행봉사자 대상 경품추첨은 행사 종료 후 별도 추첨합니다.



## 2023년 자치계획 투표 결과

2023년 은평구 참여예산 등(洞)지역사업 1억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투표대상 : 2022년 8월 3일 기준 만16세 이상 구산동 주민  
투표참여인원 : 총 378명(사전 256명, 현장 82명)

### 사업별 찬반투표(찬성 · 반대)

연번	프로그램사업	득표율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소계				86,020	
1	가족다양성의 이해	83%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우리민족의 전통 예절과 풍습체험	4,500	
2	봉산을 듣고,보고,만지고,느끼는 미래세대	89%	봉산 및 자연속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심 신의 건강증진 도모	5,000	
3	어르신들의 반찬만들기	85%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요리교실	10,000	
4	우리동네 워터파크	81%	마을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터	10,000	
5	우리동네 소화기함	90%	갑작스런 화재를 초기진화 할수 있도록 공용소화기함 설치	4,000	
6	청소년 동아리, 모임활동지원	82%	동아리 운영, 동아리 활동 (의제발굴, 공론장 운영 등) 실시	5,500	
7	청소년과의 소통 및 부모교육	81%	청소년과의 소통 및 부모교육	2,520	
8	서울형 주민자치사업	행복마을 구산동, 주민맞춤형 프로그램	87%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4,500

연번	시설사업	득표율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소계				40,000
9	거북골 숲 체험장 CCTV설치	88%	거북골 숲 체험장에 CCTV 및 체험장 안쪽의 산비탈과 꽃동산을 만들어 아름다운 환경조성	20,000
10	개나리동산 만들기	85%	수국사옆 방치되어 있는 공원용지를 개나리를 식재하여 환경 및 불법 경작을 막자	10,000
11	수국이 있는 수국사	81%	수국사 주변에 수국길을 만들어 테마가 있는 마을을 만들자	10,000

## 행정사항

- 주민총회 홍보장소 섭외 및 홍보물 부착 등 협조
- 사전투표 독려 및 주민총회 홍보에 적극 협조
- 주민총회 영상촬영 지원
- 행사장 설치, 진행, 보조, 안내 등 주민총회 전반에 걸친 지원

## 총회평가

- 2022년 활동 및 2023년 의제설명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이해하기 쉬웠음.
- 더 많은 주민들의 사전투표를 받지 못한 점이 아쉬움.
- 구산동 주민자치회 조직 이후 대면으로 하는 주민총회가 처음이었음에도 준비한대로 잘 진행되었음.
-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주민자치위원 개인의 업무가 바빠지다 보니 모두가 총회준비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
- 준비과정부터 주민총회 당일까지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 짐.



# 8. 2022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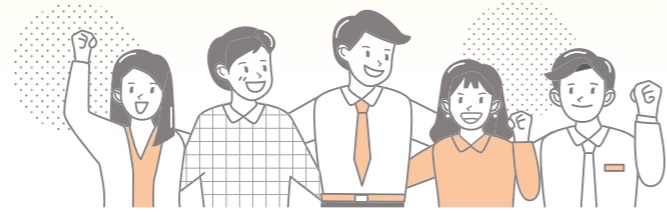
## 주민자치회 각종 회의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 자매결연지 교류 행사



##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축제



### 수국사 주변 꽃모 심기 행사



## 9. 구산동 주민자치회 로고[B] 공모전 결과보고

**접수기간** 2022. 6. 3.(금) ~ 6. 24.(금) - 총 14작품 공모전 참가  
**주민선호도 심사 진행** 2022. 7. 7.(목) 주민센터 1층 로비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2022. 7. 19.(화)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심사결과** 1) 주민선호도 심사 결과 총 5개 작품 선정  
 2)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대상1점, 입선2점 선정  
**대 상** 상금 400,000원 (1작품)  
**입 선** 상금 100,000원 (2작품)  
 ※ 부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입상자 본인 부담

○ 대상 이○기



○ 입선 이○준



○ 입선 장○정



## 10. 구산동 주민자치회 위원 소감



이상훈 회장

2021년 코로나19 상황 속에 주민자치회가 조직되고 운영해 오면서 조금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2022년을 맞이하였고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기승을 부리고 상반기 두 번의 선거로 인해 모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마을 의제발굴을 위해 애쓰고 사업을 실행하시느라 위원님들 무척이나 애쓰셨습니다. 2023년에는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조금 더 힘을 보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또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 우리 위원님들 주민자치사업을 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6어시니어모텔아카데미'에 참가하셨던 분 중에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마음이 치유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주민을 위한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달라시며 '구산동 주민자치회 화이팅'이라고 해 주신 한마디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구산동을 만드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해 수고하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유해영 부회장



이진숙 사무국장

간사와 사무국장으로서 주민자치회 살림을 이끌어 오면서 위원님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시고 어려운 부탁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항상 애 쓴다, 고생한다며 토닥토닥 해주셨기에 힘이 되고 화이팅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구산동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마을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의 봉사 정신과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을 도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구산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이경진 간사



양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주민자치회 양유승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조심스럽게 구산동 주민자치사업을 진행하면서 임인년(壬寅年)의 마무리 시간을 맞이하고 있고 계묘년(癸卯年)의 새해의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주민자치회 여러 사업들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주신 은평구 주민자치연합회 이상훈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산동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해주신 이진숙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주민자치회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는 마스크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자주 만나지 못하여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대면으로 회의도 하고 정담도 나누면서 구산동과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다함께 열심히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여 살기 좋은 구산동을 만들어 갑시다. 저물어가는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정윤호 위원

봉산은 저에게 어릴 적부터 뛰어놀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올해 이곳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아이들이 자연에서 맘껏 뛰어놀고 숲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봉산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미래세대'는 우리 구산동의 특색을 살려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고 아이들이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그린미래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늘 그린미래분과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회장님,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사무국과 주민센터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양환 위원

플뿌리민주주의에 흥한 삽 었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생기 넘치는 구산동 만들기예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좋은분들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또 한해를 잘 살았다 부듯함이 남습니다. 서로서로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김생두 위원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위원장 김생두입니다.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으므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자치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새로운 마을사업에 대해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우고 베푸는 일에 좀 더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구산동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행복한 동네를 꿈꾸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지역의 현안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구산동을, 나아가 은평구를 훨씬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민 위원



이수형 위원

2022년 코로나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되돌아보며 재이난일도 많고 행사가 취소되는 일이 있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왕성한 활동이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화이팅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지연하게 됐던 주민자치위원, 어느새 임기 12년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구산동을 더 많은 관심으로 살피게 되었고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진행했던 유익한 프로그램 중에 시니어모텔아카데미는 정말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동네 곳곳도 시설사업으로 불편했던 환경과 시설물도 생활하기 편하게 바뀔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어 구산동을 오래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갈 것이라 생각하며 작은 힘이지만 많은 관심받고 참여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



최순애 위원

구산동을 '사랑할 결심'과 호기심으로 두드린 주민자치회...  
역시 사랑에는 책임과 헌신이 따르는 법.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만남과 교류가 쉽지 않았던 터,  
지난 2년간의 자치위원 활동이 아쉽고, 흡족할 수만은 없네요...^^  
그럼에도 주민자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체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공부가 됐어요^^  
조직이나 사람이나 초기의 어설피른 시간이 지나면 더 발전하는 터,  
구산동 주민자치회와 다른 위원님들의 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한번 자치위원은 영원한 자치위원^^, 그런 마음으로 동네를 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 위원

숲 체험 사업을 하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뛰어노는 걸 보니 너무 부듯했습니다. 구산동이 행복의 동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도 파이팅합니다.

2년동안 코로나와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활동이  
어려웠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산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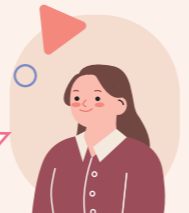


마정옥 위원



민은주 위원

주민자치회로 2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아쉽습니다.  
나눔돌봄분과를 구성하고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기뻐했습니다.  
나눔돌봄 말처럼 나쁜 자서는 못했음 일들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힘과 마음을  
나누니 뭐든 할 수 있구나라는 강한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시원씩 쿠폰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눔돌봄분과위원님과  
지역미용실 원장님 다섯분, 주민센터 담당자의 노고가 있었기에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우리지역에 필요한 변화를 작게나마 시도해본 결과로 100% 만족은 없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좀 더 성숙하고 폭넓은 시야로 주변을 돌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구산동 주민자치회 파이팅!



최정숙 위원

2023년 구산동의 번영을 위하여 의논하고 협력하여 더욱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힘 쓰겠습니다. 2023년에도 구산동 주민자치회  
파이팅입니다.



이영길 위원

2년간의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점은 개인의 목소리가 모여 다수가 되고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구산동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목소리가 모여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자유롭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조금 아쉽고, 나름 2개 분과  
참여를 한다고는 했는데 보다 많은 분들과 소통과 교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활기찬  
구산동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루모또히로코 위원

처음으로 주민자치회에 참가했습니다.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고 가르쳐주셔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감사했고 구산동이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 [별첨]은평구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3.09.26 조례 제962호  
(전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9.07.18 조례 제1275호  
(일부개정) 2020.07.09 조례 제1351호  
(전부개정) 2021.12.09 조례 제1480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등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등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등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 시설과 그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종교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등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업무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한 업무
7.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의 정원은 50명 내외로 한다.

###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등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②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이수 유효기간은 임기 내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제6항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 추첨하고, 각 호별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 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결원의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가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하는 위원은 임기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위원과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제18조에 해당하는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하지 않은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의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 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정기회의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속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자치계획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의 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서 보고 및 결정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해야 한다.
-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⑥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 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제6장 자치회관

**제23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다만, 갈현제1동과 응암제1동은 ○○동문화의집으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3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운영비와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의한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2와 같다.  
 ⑥ 사용료 등의 반환은 별표3와 같이 한다.  
 ⑦ 제2항에 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3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5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 제8장 보칙

**제37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8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전부개정으로 이전 부칙 삭제 -----

**부 칙 <제1480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및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4조(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주민자치협의회로 본다.

제5조(자치회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회관은 제23조에 따른 자치회관으로 본다.

**[별첨2] 은평구 구산동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2021.1.21. ~ 2.4.	내규수립 의견수렴	자치위원 온라인 설문
2021.2.5.	내규수립 내용	자치위원 워크숍
2021.2.15.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021.2.19.	운영 세칙안 논의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021.3.4.	운영세칙 제정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2.3.15.	운영세칙 개정안 검토	주민자치회 운영진회의
2022.3.22.	운영세칙 개정안 의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2.7.26.	운영세칙 부칙 개정안 의결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2022. 7. 26.



**구산동 주민자치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세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규정에 따라 은평구 구산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산동 주민자치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산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구산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②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③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 ④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 ⑤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자치회관 운영 등 동 행정사무 위탁·수탁 처리
- ⑥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제2장 주민자치회

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대표조직이다.

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대표조직이다.

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공고와 인적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례에 따라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위촉한다.

④ 예비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촉하거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위원의 의무)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연간 3회) 및 분과회의(연간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사전 통보 연간 2회 시 예외로 인정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5.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6. 주민자치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민자치회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촉을 결의하고,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촉을 결의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 절차와 방법은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1조(사임 및 해임) ① 운영진,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사임서를 자치회장 또는 운영진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 제출 즉시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사임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하면 사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운영진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본 세칙 제26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진 임기) ① 주민자치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운영진을 둔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한다) 1명
2.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한다) 1명
3. 감사 2명(단, 운영진회의 출석은 필요에 따른다.)
4. 간사 1명
5. 분과별 분과위원장 1명
6. 분과별 분과 총무 1명
7. 사무국장 1명

제13조(운영진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단독 후보인 경우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 시 선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단독 후보의 경우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하여 과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분과 총무는 해당 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1명을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사무국장과 간사는 운영세칙 제16조, 17조항을 따른다.

제14조(운영진 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며, 분과총무를 지명한다. 분과위원장 부재 시 분과총무가 분과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회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한다.
- ⑤ 분과 총무는 분과회의 결정사항과 분과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 ⑥ 사무국장 (또는 사무원)은 주민자치회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운영계획과 자치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⑦ 사무국장과 간사는 운영세칙 제16조, 17조항을 따른다.

제15조(궐위와 후임선출) ① 자치회장, 운영진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치부회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신임 자치회장 선출시까지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분과장 중 연장자가 남은 임기동안 자치부회장직을 수행한다.
-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16조(사무국) 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와 자치회관 위수탁 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여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은 실무 진행시 해당 내용을 주민자치회 임원, 운영진 또는 위원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전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⑤ 간사는 정기회의에서 주민 또는 자치위원 중 1명을 자치회장이 선임 또는 호선하며,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자원봉사자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 2. 기록물 생산 및 보존
  - 3. 예산, 회계 및 지출 실무
  - 4.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
  - 5.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 6.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실행 지원
  - 7. 분과활동 활성화 및 운영 지원
  - 8. 자치회관 위수탁 사무
  - 9. 그 외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의 보조를 받아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를 총괄한다.

-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
  - 1. 구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주민자치회 예산 집행 및 사업 기획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
  - 3. 주민과 소통하며 구산동 주민자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③ 사무국장에게는 활동기록부의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수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자치회관 운영 분과는 필수로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총무를 지명한다.
- ④ 각 분과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 1. 해당 분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 2. 행정사무 위·수탁 발굴
  - 3. 마을 공동사업 수행
- ⑤ 분과위원회의 분과이동은 연 1회 기간을 두어 실시한다.
- ⑥ 분과원(주민)은 분과회의 개최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9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무·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 1. 주민총회
- 2. 정기회의
- 3. 임시회의
- 4. 운영진회의
- 5. 분과회의
- 6. 민관협력회의
- ② 주민자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주민 누구나 참관 가능하다. 단, 참관인의 발언권은 제한한다.

제20조(주민총회)

-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연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 개최 여부 및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만 16세 이상의 주민(구산동 거주, 사업자, 단체소속 등 생활주민 포함)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전체 주민의 0.5%(서면투표 등 사전투표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입주자대표회의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⑧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21조(정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정기회의의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 ①항에 따른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 4. 운영진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위촉 해제 요구
  -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 7. 운영진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22조(운영진회의) ① 운영진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진회의는 세칙 제12조에 따른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원임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제23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③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분과원을 정원으로 매월 정기회의 이전에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인 분과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④ 분과에서 결정한 사항은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운영진회의에 부의한다.  
 ⑤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원 등의 경우 정기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은 1회, 3분으로 제한한다.  
 ⑥ 분과 활동은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 사무국장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석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제24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간사, 사무국장 등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수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설명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②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설명회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자치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회의 참석 불가할 시,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위임받은 위원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1인 초과 위임은 불과하다.  
 ④ 대면회의가 불가할 경우 서면결의 등을 통한 비대면 의사표시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자치계획 수립) ① 운영진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②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③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④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8조(자치회관 운영)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활력소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부터 제 34조까지, 같은 조례시행 규칙 제10조부터 제13조의4까지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2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주민자치회에서 작성 및 수·발신 공문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3. 문서접수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8. 위원 위·해촉 대장
9.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0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② 직인은 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장 자치회관의 운영

제31조(자치회관 운영 원칙)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4조 내지 제 14조, 같은 조례시행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 제4장 재정 및 예산 관리

제32조(사업비 집행·공개) ①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제34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사무국장이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 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며 긴급 또는 경미한 지출은 유선 및 구두 승인 후 집행하고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2022. 7. 26.)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22. 3.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운영세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제4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10,000원으로 정하되, 납부계좌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회비를 집행할 수 있다.

1. 민관협력 행사 (마을 축제, 체육대회, 자매 결연지 방문, 적십자 성금,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장학금 지급 등) 시 단체 경비로 지급한다.
2. 애경사에는 현금 100,000원 (또는 상당의 화환)을 지급 한다.  
단, 위원 2년 임기 중 1번을 원칙으로 하며 직계가족(부모, 자녀) 및 배우자에 한함.  
(※ 부모에는 배우자의 부모 포함)
3. 경상비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비(착불을 포함한 택배비, 세탁비, 수수료 등) 현금성 경비
4. 정기회의 식비(1인 8,000원) 초과분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단, 초과분은 50%(1인 4,000원)로 제한한다.
- ③ 신규 위원은 위촉된 달로부터 회비를 납입하며, 회비 납입 위원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재정 등은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경미한 지출 및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은 선 결제 후 주민자치회에 보고한다.
- ⑥ 회계연도가 끝나면 잔액에 대해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 후원, 자치위원에 대한 답례품 등)
- ⑦ 회비는 매월 정기회의에서 보고하며 매년 12월 별도의 감사를 거쳐 보고한다.

행복마을 구산동, 100년의 시작!

---

## 2022년 구산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결과보고서

---

통 권 제02호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구산동 주민자치회